

임원 복무 규정

(제정) 2020.08.27. 규정 제1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김해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무 규정은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재단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말한다.

제2장 복 무

제4조(성실의 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재단의 업무 감독 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한다.

제7조(친절·공정의 의무)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장이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영리업무 및 겸직업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정치운동의 금지) 임원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임원의 근무시간, 출장에 대하여는 「취업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임원의 일반휴가는 1년 미만은 13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4일, 2년 이상(연임포함)은 1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급휴가로 하되 1일당 총 연봉액의 365분의 1을 감한다.

③ 임원의 특별유급 휴가는 「취업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제14조(재단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장 보 수

제15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보수 규정」, 「연봉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장 상 벌

제16조(포상) 대표이사는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재단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경우

제18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제19조(문책의 효력) ①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 이 경우 「보수 규정」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경고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규정」에 의한 봉급의 10분의 3을 감하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한다.

③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충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을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④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명권자가 행하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당해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은 할 수 있다.

제21조(의원면직) ①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이 제22조의 규정에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이사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타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22조(징계양정기준) 임원의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장 보 칙

제23조(인사관리)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성과관리)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와 성과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규정 제101호 2020.08.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2조 관련)]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임 해임	해임, 경고 경고	경고 주의	주의
2. 복종의무 위반	해임	경고	주의	주의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해임	경고	경고	주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임	경고	경고	주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임	해임	경고	주의
6. 청렴의무 위반	해임	해임	경고	주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임	경고	주의	주의
8. 영리업무 및 경직 금지의무 위반	해임	해임	경고	주의
9. 정치운동금지 위반	해임	경고	주의	주의